학칙

제정 1979.01.01.
전문개정 2018.10.23.
개정 2019.04.30.
개정 2019.08.28.
개정 2020.04.28.
개정 2020.08.21.
개정 2021.01.28.
개정 2021.05.20.
개정 2021.12.15.
개정 2022.06.30.
개정 2023.02.15.
개정 2023.09.08.
개정 2024.02.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학의 사회공헌과 평생직업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성실·박애·봉사 정신을 갖춘 전문지식 습득과 실무능력 개발에 주력하는 실천 여성 인재, 나눔과 봉사 인성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공감 여성 인재, 산업 및 사회 변화에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창의 여성 인재, 국제적 감각과 소통능력 개발에 적극적인 소통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3조(명칭) 본 대학의 명칭은 수원여자대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 대학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캠퍼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72
2. 해란캠퍼스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입학정원의 예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다.

제2장 직제

제6조(교직원)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총장, 전임교원, 직원, 조교로 구성되며, 총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 8. 28.>

②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되며, 전임교원과 조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총장은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겸임교원, 초빙교원,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 객원교원,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8.>

④ 장애·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7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대학 경영 및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소속 교직원의 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전임교원은 학문연구와 학생교육, 학생지도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8.>

③ 직원은 대학 행정사무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지원한다.

④ 조교는 교원의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조(조직) ① 본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직속기구 및 중앙 행정조직과 하부 조직, 부속·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의 조직 설치·운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제8조의2(산학협력단 설치)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9. 8. 28.>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의3(도서관 운영) ① 본 대학에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2. 6. 30.>

②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9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3년 또는 4년으로 하며, 학과별 수업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2년으로 한다.

③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에 입학한 자가 졸업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2. 6. 30.>

제10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학기) ① 학기는 2학기제 또는 다학기제, 유연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2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③ 다학기제, 유연학기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 학기의 기간 및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12. 15.>

④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또는 실습학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개시 전에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휴업)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6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18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입학전형) 신입학 전형은 매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0조(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총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등록절차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승인한다. <개정 2022. 6. 30.>

제24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25조(편입학) ① 총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② 편입학은 각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삭제 2019. 4. 30.>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에서는 재입학 신청자의 제적사유, 교육과정 연계성, 졸업요건 등을 심사하여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재입학은 재입학 여석산출 방식에 따라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소속 학과가 폐과되었을 경우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산업체위탁생의 재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위탁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및 전과

제27조(휴학) ① 질병, 병역복무, 가정형편,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의 1학년 1학기,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최초 학기 중에는 질병, 출산, 육아를 제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2. 6. 30.>

②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을 기본 단위로 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③ 후기졸업 대상자, 미취득 교과로 인한 교육과정 수강지도의 어려움 등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개 학기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8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3주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 폐과된 학과 복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4. 28.>

제29조(자퇴) 학생의 질병, 실종,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적)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한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3. 타교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가진 자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의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

제31조(전과) ① 모집단위가 다른 학과나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을 전과라 한다.

② 전과는 1학년 2학기와 2학년 1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과에 따른 경우에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전과는 전출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전입학과 입학정원 20% 내에서 결원 발생 시에 허가할 수 있다.

④ 전과한 자는 전입학과의 졸업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교양 및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 다만, 폐과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면허 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연계교육 입학자
4.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입학자
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
6. 계약학과 입학자

제7장 교과 및 수업

제32조(교육과정) ①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성취도가 높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2023. 9. 8.>

② 사회수요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8, 2023. 9. 8.>

③ 학과별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편성하고 각 교과를 필수와 공통, 선택으로 구분하며, 교원자격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는 교직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 교육과정 편성비율은 교양교과 10~30%, 전공교과 70~90%로 한다. 다만, 교직교과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포함할 수 있다.

⑤ 현장실습 의무대상 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필수로 한다.

⑥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학 및 학적이 변동된 자는 복학 및 신규허가 학년 및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⑦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 또는 두 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⑧ 학사제도 개선에 따른 소단위전공, 부전공 등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4. 2. 14.>

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한 인증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6. 30.>

제32조의2(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대학과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제목개정 2022. 6. 30.]

제32조의3(학기별 자격기반 인증형 교육과정) 각 전공은 산업체 및 국가의 인력수요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수준 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수준의 전공 관련 자격증에 기반을 둔 학기별 자격기반 인증형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4(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정규과목과 병행한 비교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통한 미래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기별 교과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2. 15.><개정 2023. 9. 8.>

제32조의5(부전공 인증과정) ① 각 전공은 학제 간 연계교육 활성화와 학생 취업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전공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5.>

② 학생의 진로목표 또는 관심분야에 따라 소속학과 외에 타 전공영역의 학습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융합 부전공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32조의6(연계교육과정 운영) ①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산업대학,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일정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계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32조의7(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 운영) ① 학생의 진로특성 및 학습역량에 따른 자기개발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도전의식과 창의·융합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개정 2023. 2. 15.>

② 자율설계 경력개발학기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4. 30.>

제32조의8(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대학-학생-산업체의 공유·협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직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4.>

제33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2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제3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절차와 방법은 따로 공고한다.

②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이며, 2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2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후기졸업 대상자는 12학점 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수강인원이 교양 30명, 전공 15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상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④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35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 범위 안에서 학생이 국내·외 학교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 연구 및 실습(인턴실습을 포함한다) 수행, 산업체 근무경력,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하여 관련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③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조기취업자의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원격수업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통해 인정받은 이수학점을 포함한다. <개정 2021. 1. 28, 2022. 6. 30.>

⑤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현장실습수업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운영한 경우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다음학기에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⑥ 군 복무기간 중 교육·훈련 등 다양한 교육적 경험 또는 군 e러닝에서 제공하는 원격강좌를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5.>

⑦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5.>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1. 12. 15.>]

제36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현장실습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 및 개편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의 1교시는 45~50분으로 한다.

④ 강좌는 09:00부터 22:00까지 개설·운영할 수 있다. 다만, 야간수업은 산업체 근무자가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수강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분반 또는 대단위 합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의2(원격수업) 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 전체수업(직무수행능력평가 제외)의 70% 이상인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 12. 15.>

②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5.>

[제37조의2에서 이동 <2022. 6. 30.>]

제36조의3(타교생의 수학) 국내·외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6. 30.>

제37조(계절수업) ①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 중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집중수업)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효과와 학생들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학점 충족요건 시수를 고려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9조(출석의무) 학생은 본인이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 및 실습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40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공무, 상고,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출석인정 기간은 학기 중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취업의 경우 예외로 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1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집중수업, 계절수업은 예외로 하며, 실습학기 수업의 시수인정은 따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하며, 각 학과의 담당시간을 통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직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역할수행에 따라 따로 정한다.

③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부설기관 및 타기관의 강의를 포함하여 주당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강사의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9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기 중 전임교원이 외부출·수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강 2주 전까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2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중과 학기말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험은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답고사, 실기, 현장실습, 과제물 등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위해 산업체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③ NCS 또는 역량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학과는 학생의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체제로 전환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28.>

④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 NP)으로 처리한다.

⑤ 장애학생 또는 다문화가정학생 등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또는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② 질병인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고, 상고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③ 추가시험은 직무수행능력평가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0. 4. 28, 2023. 9. 8.>

제44조(성적) ① 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시험, 실습 및 실기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실습 등 절대평가가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② 교과목 성적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은 P급제로 할 수 있다.
다만, P급제 교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 NP)으로 처리한다.

⑤ 재수강 또는 추가시험에 대해서는 최고 B+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 석차 및 평균성적 산출에서 제외한다.

⑦ 성적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급	배점	평점
A+	95 이상 ~ 100	4.5
A0	90 이상 ~ 95 미만	4.0
B+	85 이상 ~ 90 미만	3.5
B0	80 이상 ~ 85 미만	3.0
C+	75 이상 ~ 80 미만	2.5
C0	70 이상 ~ 75 미만	2.0
D+	65 이상 ~ 70 미만	1.5
D0	60 이상 ~ 65 미만	1.0
F(NP)	60 미만	미취득
P		불계

⑧ 성적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⑨ 성적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성적의 불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5. 기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불인정한 성적

제46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는 이를 경고하고,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을 특별지도한다.

제47조(졸업) ①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및 8학기(4년제)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3년제 110학점, 4년제는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각 학년제별 졸업학점 중 교양교과는 2년제 10학점 이상, 3년제 14학점 이상, 4년제 2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공교과는 70% 이상(2년제 51학점 이상, 3년제 77학점 이상, 4년제 9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의 교양교과 졸업학점은 4학점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2022. 6. 30.>

④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1년과정 20학점, 2년과정 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 각 학년별 졸업학점 중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⑥ 현장실습 의무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제48조(후기졸업) ① 제4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후기졸업은 전기 졸업연도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제49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별표 1에 해당되는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4. 28.>

② 1996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8.>

③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별표 1에 해당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0. 4. 28.>

④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2. 6. 30.>

제50조(명예학위 수여)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수료)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2·3년제 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6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72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10학점 이상

③ 4년제 간호학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32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00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 130학점 이상

제9장 평생교육

제52조(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9. 8. 28.>

제53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① 전문대학 졸업자의 산업현장실무지식 및 기술 중심의 심화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4조(산업체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교육경비 납부 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생의 모집계획 및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5조(시간제등록제)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총 모집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③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고,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④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56조(학점은행제) ①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2년제 48학점, 3년제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종류와 전공은 별표 3의 학위종별과 같다.
<개정 2019. 4. 30.>

③ 본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수여 절차 및 방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9. 4. 30.>

제57조(비정규특별과정) ① 본 대학에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기타 비정규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공개강좌) ① 본 대학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본 대학 공개강좌를 이수한 자가 본 대학 정규과정에 입학 및 편입 시 공개강좌로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평가가 인정된 과정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제2항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공개강좌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9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은 학생의 자치활동 및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지도함으로써 대학의 전통과 문화 형성을 지원하며, 학생이 자율성, 창의성,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미디어센터 등 학생자치기구의 설치 및 활동을 승인하고 지원한다.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총학생회 및 학과별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60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1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자치기구 또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지원업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 학내 초청

제63조(간행물 발행) 학생자치기구(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이 학생자치기구 외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활동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5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전임교원 및 학생 지원 부서에 매학년도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개정 2019. 8. 28.>

② 지도교수는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의1(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2. 15.>

제11장 규율 및 상벌

제66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전념하여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장학생이 미등록휴학, 자퇴,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취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성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본 대학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신입학,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70조(성희롱·성폭력 예방) ① 총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6. 30.>

제12장 등록금

제71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은 등록금을 정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3조(결석 또는 정학 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및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4조(등록금의 감면) 총장은 타 학생의 모범이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5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따르거나 학생이 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금액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장 교무위원회 및 제위원회

제76조(구성) 본 대학에는 교무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총장, 처장,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

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30.>

제77조(소집 및 심의)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제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8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에는 대학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한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② 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학교기업

제79조(학교기업 설치) ① 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수원여자대학교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그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기업은 제4조의 교지에 설치한다. 다만, 학교기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거나 학교기업 설치·운영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지 밖(권역권 내)의 부지 또는 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은 학과와 연계하며, 사업종목과 사업내용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22.06.30.>

제80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5%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한 학기당 3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단위는 최소 2학점 이상으로 개설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81조(보상금 지급) 학교기업 운영성과 및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자체평가

제82조(자체평가 실시) ① 본 대학은 대학의 지속적 발전 및 교육품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교육 운영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는「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및「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 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③ 자체평가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83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5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부서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22. 6. 30.>

제17장 보칙

제87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10.23.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학점인정) 제4항은 2018년 7월 4일부터, 제33조(학점이수) 제2항, 제34조(수강신청) 제2항, 제47조(졸업)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1조(수료)는 2019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경우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편제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재적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편제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졸업) 제3항은 2020학년도 신입생 교육과정 이수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통·폐합 또는 학과 명칭 변경 시 해당학과 휴학자 또는 제적자는 다음의 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상학과	복학 및 재입학 학과
호텔조리과	호텔외식조리과
외식산업과	호텔외식조리과
레저스포츠과	스포츠지도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그래픽디자인전공, 미디어디자인전공)
모바일미디어과	융합소프트웨어과
미용예술과	미용예술과(메이크업미용전공, 피부미용전공, 헤어미용전공)
비즈니스과 세무비즈니스전공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비즈니스과 중국비즈니스전공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시각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 전공

제3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수업연한 변경 전에 입학하여 휴학 중인 2년제 과정 학생은 3년제 과정으로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년제 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할 경우 해당 교과목이 폐지되었거나, 학기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수업연한 변경 전에 입학하여 자퇴 및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할 때에는 재입학 당시의 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다만, 교과목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통·폐합 또는 학과 명칭 변경 시 해당학과 휴학자 또는 제적자는 다음의 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상학과	복학 및 재입학 학과
약용식물과	바이오약용식물과
패션브랜드매니저과	패션마케팅과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세무회계과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항공서비스과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비서과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로 전과
스마트앱콘텐츠과	
융합소프트웨어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통·폐합 또는 학과 명칭 변경 시 해당학과 휴학자 또는 제적자는 다음의 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상학과	복학 및 재입학 학과
바이오약용식물과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로 전과
오피스매니저과	
항공서비스과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통·폐합 또는 학과 명칭 변경 시 해당학과 휴학자 또는 제적자는 다음의 학과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대상학과	복학 및 재입학 학과
아동보육과	타학과로 전과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방송콘텐츠과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방송콘텐츠과
스포츠지도과	운동건강관리과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최근 4년간 학년도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개정 2019. 4. 30, 2019. 8. 28, 2021. 1. 28, 2021. 5. 20, 2021. 12. 15, 2022. 6. 30, 2023. 2. 15, 2023. 9. 8, 2024. 2. 14.>

1. 2024학년도

계열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계	
자연과학	간호학과	4년	191		191	간호학사
	치위생과	3년	139	30	169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3년	40		40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식품영양과	3년	40		4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2년	60		6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80		80	제과제빵전문학사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2년	35		35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2년	37		37	미용전문학사
	반려동물과	2년	61		61	동물보건전문학사
	작업치료과	3년	25		25	작업치료전문학사
	의료재활과	2년		40	40	의료재활전문학사
	펫케어과	2년		20	20	동물보건전문학사
	메디컬허브치유과	2년	20		20	메디컬허브치유전문학사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년	64		64	유아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60		60	사회복지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36		36	세무회계전문학사
	패션마케팅과	2년	35		35	패션마케팅전문학사
	부동산서비스과	2년		20	20	부동산전문학사
	보육과	2년		20	20	보육전문학사
예체능	방송콘텐츠과	2년	40		40	방송콘텐츠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운동건강관리과	2년	35		35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288	130	1,418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1년		26	26	물리치료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2년	17		17	조리학사
	식품영양학과	1년	20		20	이학사
인문사회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예체능	시각디자인학과	1년	40		40	디자인학사
	운동건강관리학과	2년	17		17	체육학사
	패션디자인학과	1년	20		20	디자인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144	56	200	

* 펫케어과, 메디컬허브치유과, 부동산서비스과, 보육과, 의료재활과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운영함

2. 2023학년도

계열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계	
자연과학	간호학과	4년	179		179	간호학사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3년	40		40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식품영양과	3년	60		6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2년	60		6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80		80	제과제빵전문학사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반려동물과	2년	80		80	동물보건전문학사
	펫케어과	2년	20		20	동물보건전문학사
	메디컬허브치유과	2년	20		20	메디컬허브치유전문학사
인문사회	유아교육과	3년	64		64	유아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60		60	사회복지전문학사
	아동보육과	3년	30		30	보육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40		40	세무회계전문학사
	패션마케팅과	2년	40		40	패션마케팅전문학사
	부동산서비스과	2년	30		30	부동산전문학사
	보육과	2년		10	10	보육전문학사
예체능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2년	30		30	방송콘텐츠전문학사
공학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2년	30		30	VR콘텐츠전문학사
예체능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스포츠지도과	2년	40		4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393	50	1,443	
자연과학	물리치료학과	1년		26	26	물리치료학사
	호텔외식조리학과	2년	17		17	조리학사
	식품영양학과	1년	20		20	이학사
인문사회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예체능	시각디자인학과	1년	40		40	디자인학사
	스포츠지도학과	2년	17		17	체육학사
	패션디자인학과	1년	20		20	디자인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144	56	200	
예체능	패션디자인과	3년		30	3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산업체 위탁 입학정원(계)				30	30	

* 펫케어과, 메디컬허브치유과, 부동산서비스과, 보육과는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운영함

3. 2022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67		167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3년	43		43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2년	80		8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80		80	제과제빵전문학사
		바이오약용식물과	2년	40		40	바이오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64		64	유아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80		80	사회복지전문학사
		오피스매니저과	2년	40		40	사무경영전문학사
		아동보육과	3년	68		68	보육전문학사
		세무회계과	2년	42		42	세무회계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2년	40		40	항공서비스전문학사
		패션마케팅과	2년	40		40	패션마케팅전문학사
예체능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2년	40		40	방송콘텐츠전문학사
공학		융합콘텐츠과 VR콘텐츠전공	2년	60		60	VR콘텐츠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스포츠지도과	2년	40		4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494	40	1,534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보건식품	물리치료학과	1년		16	16	물리치료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학과	1년	40		40	디자인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40	96	136	

4. 2021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수업 연한	입학정원			학위명
				주간	야간	계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4년	150		150	간호학사
	보건식품	치위생과	3년	120	40	160	치위생전문학사
		물리치료과	3년	30		30	물리치료전문학사
		보건행정과	2년	40		40	보건전문학사
		식품영양과	3년	80		80	식품영양전문학사
		호텔외식조리과	2년	80		80	호텔조리전문학사
		제과제빵과	2년	40		40	제과제빵전문학사
		약용식물과	2년	40		40	약용식물전문학사
	예술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2년	40		40	미용전문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과	3년	64		64	유아교육전문학사
		사회복지과	3년	80		80	사회복지전문학사
		비서과	2년	80		80	비서전문학사
		아동보육과	3년	68		68	보육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세무회계전공	2년	42		42	세무회계전문학사
		비즈니스과 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	2년	40		40	중국항공비즈니스전문학사
		패션브랜드매니저과	2년	40		40	패션브랜드전문학사
공학	사회실무	융합소프트웨어과	2년	40		40	융합소프트웨어전문학사
		스마트앱콘텐츠과	2년	40		40	IT콘텐츠전문학사
예체능	예술	시각디자인과 그래픽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시각디자인과 미디어디자인전공	3년	40		40	시각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과	3년	40		40	패션디자인전문학사
		연기영상과	3년	40		40	공연연기전문학사
		스포츠지도과	2년	40		40	체육전문학사
		실용음악과	2년	60		60	음악전문학사
		미디어영상스피치과	2년	40		40	미디어영상스피치전문학사
정원내 입학정원(계)				1,494	40	1,534	
자연과학	간호	간호학과	1년		20	20	간호학사
	보건식품	물리치료학과	1년		16	16	물리치료학사
인문사회	사회실무	유아교육학과	1년		30	30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1년		30	30	사회복지학사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계)				0	96	96	

[별표 2] 학교기업의 명칭과 학과 연계사업 <개정 2023. 9. 8.>

학교기업 명칭	연계학과	사업내용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	식품영양과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별표 3] 본 대학 총장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종별 <신설 2019. 4. 30.><개정 2021. 5. 20.>

학과	학점은행제전공	학위명
미용예술과	미용전공	미용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전문학사
아동보육과	아동·가족전공	보육전문학사
제과제빵과	호텔제과제빵전공	제과제빵전문학사
실용음악과	실용음악전공	음악전문학사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 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06.30.>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위 사람은 본 대학 ○ 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본 대학 ○ 년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여전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위 명 :

위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학) ○○○○ - ○○○○
연도 일련번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 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9. 4. 30.>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학 위 명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여자대학교총장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수 원 여 자 대 학 교

총장 ○ ○ ○

학위번호 : 수원여대-학점- ○○○○-○○○○

연도 일련번호